
(주)인게이지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Ethics Charter and Practicing guidelines)

[개정이력]

제정권자	초도제정	개정일자	개정내용
대표이사	2024.09.02.		신설

관리부서 : 총무팀

주식회사 인 게 이 지

인게이지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제정 2024.09.02. / 시행 2024.09.02.

서문

주식회사 인게이지는 근면성실, 인화단결, 창의개발을 근간으로, 주주,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일등기업이 되고자 노력한다.

【제정목적】

주식회사 인게이지(이하 “회사”라고 한다)은 임직원에게 윤리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시키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상호 간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본 윤리헌장(이하 “헌장”) 및 실천 규범(이하 “규범”)을 제정한다.

【적용범위】

- 본 헌장 및 규범은 회사와 계열사의 국내/외 모든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된다.
- 회사는 회사와 거래하는 투자회사, 협력회사, 판매대리점, 컨설턴트, 대리인, 중개인, 주주, 고객, 지역사회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헌장 및 규범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권장한다.
-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헌장과 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내외 사업 활동 과정에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를 준수한다.
- 본 내용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헌장 및 규범을 개정한다.

윤리헌장

【윤리헌장 등 준수】

-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헌장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헌장에 반하는 행위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을 하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주)인게이지 5대 윤리헌장]

1. 우리는 모든 업무영역에서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일상생활 및 직무수행 시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배격한다.
2. 우리는 주어진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제반 관련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3. 우리는 모든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협력 파트너로서 공정한 거래관계를 추구하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함과 동시에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질 높은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우리는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취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실천규범

제1조 「임직원 윤리」

1.1 윤리적 기업문화

-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대·내외 업무 활동 시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기준을 갖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윤리경영 기준을 준수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 ②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1.2 투명경영/반부패 (뇌물, 청탁, 금품 및 향응 수수)

- ① 회사의 임직원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 업무와 관련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 일체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 아니 된다.
- ② 회사의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 및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상호 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승진, 이동, 개업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 등과 경조사 등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관행)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은 주고받을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합리적 수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회사의 책임자나 본 규범 따른 관리부서에 문의하는 등 회사의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

1.3 이해관계의 상충행위

- ①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회사 임직원이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회사와 개인 간 또는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 될 경우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1.4 내부정보 보호

- ② 회사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 내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취득 및 관리해야 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② 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중요한 기밀 또는 경영정보 등을 외부로 누설, 유출, 제공하면 아니되며, 외부 유출·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정보보안정책 및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5 재정적 책임(정확한 기록)

- ① 회사 임직원은 회계 기록 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고,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의 모든 거래와 자금 집행은 적절한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회사 자산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추적 관리하여 회계장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자본시장법, 회계기준(IFRS) 등 국내외 금융·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회계자료 및 경영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1.6 회사 자산의 보호 및 적절한 사용

- ① 회사 임직원은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 유·무형 자산을 보호한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제1항의 유·무형 자산을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아니 된다.
- ③ 회사는 유형자산의 보호를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검사, 보안 카메라, 제어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도난·손상·보안 위협을 방지한다.
- ④ 회사는 무형자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암호화, 접근 권한 관리,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는 등 각종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1.7 문서 작성 및 보고

- ① 회사 임직원은 문서의 작성, 결재, 보존, 폐기 시 회사의 문서처리 규정에 따른다.
- ② 회사 임직원은 제1항의 문서 작성 시 은폐, 축소, 과장, 허위 사실 등 조작된 내용으로 작성·보고 하거나, 이를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제2조 「공정거래와 상생」

2.1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 ① 회사는 시장경제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그에 따른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 ② 회사는 협력사 선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파트너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회사는 협력 회사와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추구하며, 장기적으로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2 반독점 및 담합

- ①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 또는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상품(용역)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결정을 통해 모든 형태의 담합 및 입찰방해 행위 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3 부정경쟁 또는 부당 취득

- ① 회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② 회사 임직원은 사업과 관련된 기회를 얻기 위하여 뇌물, 금품 등의 제공, 기타 이익의 공여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③ 회사 임직원은 협력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상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이를 요구,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4 자금세탁

- ①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금융 거래에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이해관계인의 불법적인 재산 취득 및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 ③ 회사는 정기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2.5 지식재산권

- ①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업무에 있어서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창의성과 혁신을 보호하고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하는 모든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2.6 조세 의무 준수 및 조사 협조

- ① 회사는 조세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조세 회피, 탈세 또는 그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조세와 관련한 조사기관에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을 할 경우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조한다.

제3조 「고객가치 실현」

3.1 고객 존중 및 올바른 정보제공과 의견 수렴

- ① 회사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의 의견을 경청 및 수렴하여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2 고객 안전 및 정보 보호

- ① 회사는 연구 활동, 자재 조달, 생산과 판매, 사후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3.3 품질보증과 제품 안전

- ① 회사는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제기준 또는 고객의 기준에 근거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 ② 회사는 엄격한 품질보증 관리체계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고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3.4 제조물 책임

- ① 회사는 제품 설계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평가하여 유해 물질 사용을 차단 및 억제한다.
- ② 회사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제조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한다.
- ③ 회사는 회사의 모든 제품이 국내외 안전 기준과 규제를 준수하도록,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 ④ 회사는 회사의 제품에 관한 고객의 피드백 및 안전 관련 최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을 멈추지 않는다.

3.5 위조 부품 방지

회사는 제품 생산 및 판매의 전 과정에 있어, 정당한 경로를 통하지 않고 제조되거나 유통된 부품 또는 제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3.6 수출제한 준수

- ① 회사는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부품과 제품의 수출 또는 기술 이전 등 과정에서 관할 국가와 지역의 수출 통제 및 제재 법규를 엄격히 준수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거래에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라이선스 또는 동의를 얻는다.

3.7 책임 있는 자재 구매

- ① 회사는 분쟁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 사용에 관한 법적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 ② 회사는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의 구매 시 원산지가 분쟁 지역 또는 그 인접 국가인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③ 회사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원산지 확인 및 분쟁 지역 광물의 사용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자재 조달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제4조 「노동인권 존중」

4.1 인권존중

- ① 회사는 모든 사업 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 기준을 준수한다.
- ② 회사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어떠한 형태의 인권침해도 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대응을 제공한다.

4.2 상호존중의 의무(공정한 대우)

- ①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존중받으며 서로의 의견과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환경 조성을 위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4.3 차별금지

- ① 회사는 임직원의 국적, 인종, 출신 지역, 성별, 종교, 연령,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사회적 신분, 성 소수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력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4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회사는 사업 활동과 관련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장 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등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따른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한다.

4.5 직장내 괴롭힘 방지

회사는 임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따돌림, 협박 등과 같이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4.6 안전 및 보건

- ①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 ②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직무상 재해, 재난, 부상, 질병 등 안전상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4.7 노사화합

회사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회사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성 추구」

5.1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 ① 회사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고용 창출, 조세의 성실한 납부와 더불어, 기타 공익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② 회사는 경영 판단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5.2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 ① 회사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법규 및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사업 활동 전 영역에 있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한다.
- ② 회사는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발굴·적용하도록 노력하며, 동시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한다.

5.3 이해관계자 참여

회사는 회사 경영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구성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이해관계를 모색한다.

5.4 주주의 권익 보호

- ① 회사는 회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주주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의 가치 증진을 추구한다.

규범의 운영

【관리 책임자의 의무】

본 헌장 및 규범을 적용하는 관리 책임자는 소속 임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본 헌장 및 규범을 바르게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모니터링】

회사는 본 헌장 및 규범의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 교육, 규범 위반에 대한 보고 및 제재 절차, 규범 해석에 대한 질의 및 윤리 상담, 제보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한다.

【보고 관계】

- ① 본 헌장 및 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규범 위반 사실 적발 시 회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범 운영 책임자 및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② 임직원은 규범 위반 사실을 상위 관리자 또는 규범 운영 책임자에게 스스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타인의 위반 사실을 인지한 자는 그 사실을 회사의 규범 운영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부통제 및 내부 고발자 보호】

- ① 본 헌장 및 규범을 적용하는 담당 부서는 내외부 접근이 가능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적절한 내부통제를 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상담·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며,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해 불리한 대우나 차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교육】

- ① 본 헌장 및 규범을 적용·관리하는 조직은 회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회사가 추구하는 윤리경영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위반 시 제재】

- ① 회사 임직원이 본 규범을 위반하여 거래 상대방 등으로부터 일십만 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그 상대방과의 모든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포상 및 징계】

- ① 회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본 규범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윤리경영 활동 공시 및 정보공개】

회사는 윤리경영의 체계 및 활동을 대내외에 공시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여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윤리경영 운영조직의 설치】

- ① 회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정착, 본 헌장 및 규범의 실천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 관리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해당 조직은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
 2.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윤리경영 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해석
 4. 임직원의 헌장 및 규범 실천 사항
- ② 윤리경영 관리 조직의 구성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윤리경영 관리 조직은 조직 발전 상황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규범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키며 규범의 운영과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록

【윤리관련 상담 및 제보처리 창구】

1. 인터넷 제보 : <https://www.ingage.kr>
2. 전 화 : 031-681-7512
3. 우 편 : 경기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 367-37. (주)인게이지 ESG운영팀

부 칙

이 정책은 2024년 09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